

문서관리번호	
Rev	0
수정일	2022.10.06
문서관리팀	조달기획팀

---

# 대우건설 협력회사 행동강령

---

2022.10



## 목차

### 1. 개요

- 가. 행동강령 목적
- 나. 행동강령 대상
- 다. 행동강령 준수
- 라. 행동강령 게시

### 2. 안전/보건

- 가.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
- 나. 협력회사 표준 안전보건 관리기준의 준수
- 다. 근로자의 적격성 확인
- 라.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성 확인
- 마.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유해·위험물질 관리
- 바.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
- 사. 비상사태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조치·보고

### 3. 기업윤리 준수

- 가. 투명경영 및 청렴성
- 나. 이해상충 방지
- 다. 공정거래 준수
- 라. 위조행위 방지
- 마. 정보 보호
- 바. 신뢰문화 구축
- 사. 국제거래 질서의 존중

### 4. 환경

- 가. 환경영향체계 구축
- 나. 환경관리

### 5. 노동/인권

- 가. 인도적 대우
- 나. 차별금지
- 다. 인권정책
- 라. 임금 및 복리후생

### 6. 경영시스템

- 가. 주체적 참여
- 나. 내부신고제도 운용
- 다. 모니터링

## 1. 개요

### 가. 행동강령 목적

대우건설은 앞선 기술, 끊임없는 도전, 책임 있는 경영으로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합니다.

대우건설은 '내실경영', '미래경영', '정도경영'을 경영방침으로 삼아 공정한 거래관계를 통해 법률적/윤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성장과 협력회사의 성장이 함께하는 진정한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나. 행동강령 대상

본 행동강령은 대우건설과 일체의 거래행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됩니다.

### 다. 행동강령 준수

본 행동강령은 안전/보건,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경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한 외부 기관이 협력회사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실사를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### 라. 행동강령 게시

본 행동강령은 대우건설 협업시스템([www.dwecos.co.kr](http://www.dwecos.c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정책 및 법률 변화 등에 따라 검토하여 개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.

본 행동강령은 당사 '지속가능경영보고서', '윤리규정' 등을 참조했습니다.

## 2. 안전/보건

### 가.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해야 하며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, 실행, 점검, 조치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
### 나. 협력회사 표준 안전보건 관리기준의 준수

- ① 협력회사는 당사의 '협력회사 표준 안전보건 관리기준'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'협력회사 표준 안전보건관리기준'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 전 교육 및 지도해야 합니다.

### 다. 근로자의 적격성 확인

- ① 협력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작업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관리대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근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작업장소, 위치, 시간, 사용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위험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연령,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작업에 배치해야 합니다.

### 라.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성 확인

-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모든 기계·기구·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·기구·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·기구·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안전난간, 덮개와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## 마.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유해·위험물질 관리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 모두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 또는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화재, 폭발 또는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및 건강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파악된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
## 바.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

-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신규로 투입될 경우 근로자 혈압 및 기초체력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 개인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여 개인 질병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근로자 작업환경 및 휴게공간에 있어서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하며, 밀폐공간/분진/소음/진동/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, 작업 전환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작업 특성, 작업자 특성, 작업 장소 등 작업환경 특성 및 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
## 사. 비상사태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· 보고

- ① 협력회사는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비상사태대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검토, 개정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신규 근로자 투입 시 비상 대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요령, 비상 연락체계, 부상자 응급처치 요령, 구조장비 사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모의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회사는 비상사태대비 비축 물품 및 필요한 기구를 준비해야 하며,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, 관리해야 합니다.

- ⑤ 협력회사는 중대 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보고회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바로콘 재해보고에 등재해야 하며 해당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.

### 3. 기업 윤리 준수(Ethics)

#### 가. 투명 경영 및 청렴성

- ① 협력회사는 당사와의 모든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부실시공 ·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국내의 부패 방지 관련 법규, OECD 뇌물방지협약, 해외부패방지법(FCPA 등) 및 진출 국가의 부패 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어떤 상황에서도 직·간접적으로 뇌물공여나 청탁 등의 방법으로 당사 임직원을 회유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도록 요청하지 않으며, 당사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·부당행위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당사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,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, 부패 방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 및 감시해야 합니다.

#### 나. 이해상충 방지

- ①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, 업무와 관련된 당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·기피 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다. 공정거래 준수

- ① 협력회사는 당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국내 및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적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(담합 금지),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라. 위조행위 방지

- ① 협력회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,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, 위조·변조·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원재료 및 자재 등을 관계 법령, 사업목적,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위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
- ③ 협력회사는 위조된 원자재 및 자재 등이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한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

## 마. 정보 보호

- ① 협력회사는 당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,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거래업체 및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## 바. 신뢰 문화 구축

- ① 당사,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## 사. 국제 거래 질서의 존중

- ① 당사에 납품하는 원자재, 부품,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제 무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 이는 특정 국가, 기업, 단체 및 개인 등과의 거래 제한을 포함하며, 협력회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## 4. 환경

### 가. 환경영향체계 구축

- ① 협력회사는 환경 법규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하며, 공사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환경영향방침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며, 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, 자원 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
### 나. 환경관리

- ① 협력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,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활 소음 및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,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회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폐수 및 오수가 발생할 경우, 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방류해야 합니다.
- ⑤ 협력회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오염된 토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- ⑥ 협력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일반화학물질 유출,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⑦ 협력회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, 수자원 등을 절감하고,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## 5. 노동/인권

### 가. 인도적 대우

-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괴롭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.

### 나. 차별 금지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학벌, 지역, 연령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우해야 합니다.

### 다. 인권정책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 선언,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기준과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의 준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강제 노동, 아동 노동 등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노동을 금지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/내부 신고제도를 운용하며, 사건 접수 즉시 조사/처리해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

### 라. 근로 시간 관리

- ① 협력회사는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② 협력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,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### 마. 임금 및 복리후생

- ① 협력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직무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## 6. 경영시스템

### 가. 주체적 참여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, 본 행동강령에서 다루는 사항들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담당자 및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/보건,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 분야에서 지속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및 행동강령에 명시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.

### 나. 내부 신고제도 운용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본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내부신고제도 운용 시에,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 되어야 하며 신고 등의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

### 다. 모니터링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및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, 그와 관련한 적절한 문서를 작성·관리해야 합니다.